

재산명시신청서

민사집행법 제61조 · 가상 작성례

채권자	[가상] 김가온 서울특별시 ○○구 ○○로 00
채무자	[가상] 이도윤 서울특별시 ○○구 △△로 00

집행권원의 표시

○○지방법원 2026가단00000 대여금 사건의 2026. 4. 10. 선고 판결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	
미변제 금전채무액	금 30,000,000원
채무자의 보통재판적	서울특별시 ○○구 (가상 주소 기준)

신청취지

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.

신청사유

-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○○지방법원 2026가단00000 대여금 사건의 2026. 4. 10. 선고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.
- 채무자는 현재까지 금 30,000,000원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.
-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합니다.

2026. 8. 10.

신청인 채권자 김가온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귀중

별지 · 집행권원과 첨부서류

가상 작성례의 별지

법원·사건	○○지방법원 2026가단00000 대여금
재판	2026. 4. 10. 선고 판결
송달	피고 2026. 4. 15. 송달 (가상 기록)
확정	2026. 4. 30. 확정 (가상 기록)
집행 범위	이 샘플에서는 계산 오류 방지를 위해 원금 30,000,000원만 표시

첨부서류

-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 1부
- 송달증명원 1부
- 확정증명원 1부
- 송달료 납부서 등 접수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

재산명시는 가집행선고만 붙은 판결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. 실제 미변제액은 일부변제·상계·배당을 반영하고, 소송비용은 확정 절차 없이 임의 금액을 더하지 않습니다.